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 서류제출 안내

(데이터자격검정센터)

□ 유의사항

- · (유효기간)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(단, 학위기, 졸업장, 수첩형 자격증, 아포스티유 및 번역본 등은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)
- · (제출기한) 서류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
- · (제출범위)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

예: 응시자격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는 학력관련 서류만 제출 응시자격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자격관련 서류만 제출 응시자격 9) 4년 이상의 직장 경력자는 경력관련 서류만 제출)

- · (심사기준일) 빅데이터분석기사 <u>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</u>
- · (심사결과) 응시자격 서류를 미제출, 불완전제출, 허위기재하거나, 응시자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합격예정자격 취소
- · (결과통보) 심사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하며, 결과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의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제출기한 : <u>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 내(휴일 등으로 변동기능)</u>

- 제출기한 내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나, **제출기한이** 지나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・추가할 수 없음
 - 제11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 예시

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			실기시험 원서접수	실기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′25. 9. 26.	′25. 9. 29. 10:00 ~ 10. 16. 18:00	′25. 10. 1. ~ 10. 16.	′25. 10. 27. ~ 10. 31.	′25. 11. 29.	′25. 12. 19.

-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을 심사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하며, 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
 - * 결과 통보(승인 및 보완제출 요망 등)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에 등록된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응시자격

[응시자격]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등 (전공무관)
- 2)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3)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(종목 무관)
- 5)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(종목 무관)
- 6)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7)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8)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9)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직무분야 무관)
 - ※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

[비고]

- 1)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'대학졸업자 등',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'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'에 해당
- 2) '졸업예정자'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- 3)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'대학졸업예정자'에 해당(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, 교육수료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)
- 4)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'대학졸업자', 그 졸업예정자는 '대학 졸업예정자'에 해당
- 5) '이수자'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
- 6) '이수예정자'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
- 7)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(2)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일이후 직장경력만 인정

□ 제출서류

- 공통사항
- ·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
- · 제출서류는 <u>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</u>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어야 함

예외: 학위기, 졸업장, 수첩형 자격증, 아포스티유 및 번역본 등은 유효기간에 제한없음

· 증빙자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

예: 응시자격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는 학력관련 서류만 제출 응시자격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자격관련 서류만 제출 응시자격 9) 4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력관련 서류만 제출)

- 학력관련 제출서류
 - * <u>증명서류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체를 통한 서비스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</u>하며, 일부학교는 지원되지 않음

졸업	자	① 졸업증명서 (학위증, 학위취득일이 포함된 학위취득증명서 등)
	대학	① 재학증명서 (휴학증명서, 재(제)적증명서 등)
	전문대학	
졸업예정자, 최종학년재학	평생교육 진흥원	① 학점인정 증명서 · (4년제)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· (3년제)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· (2년제)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(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, 현재 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중인 자는 해당없음)

[주의사항]

- ※ 최종학년 이상 또는 조기졸업이 표시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경우 불인정
- 불인정 예시사례
 - 예①: 6년제 대학 재학 중 4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 - 예②: 4년제 대학 재학 중 3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 - 예③: 2년제 대학 재학 중 1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
※ 학력변동사항확인서

- 학년표기 미기재 또는 불일치시 제공양식(첨부4) 사용
- 대학총장, 교무처장, 교학처장 날인
- ※ '응시자격 기준일' 이전의 수료일자(또는 발급일자)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

○ 경력관련 제출서류

구분		4대보험 가입자	4대보험 미가입자
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	
일반 사업장	피고용인	 경력증명서 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인정 4대보험 가입확인서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폐업사실증명원	
폐업한	사업주가 있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① 경력증명서, ② 폐업사실증명원 (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일직업 종사자(사 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사업장	사업주가 없는 경우	 ③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	① 경력증명서 ②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	
프리랜서,	사업주가 있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(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일직업 종사자(사 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계약직	사업주가 없는 경우	 ③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	① 경력증명서 ②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군경력자	사병, 장교 부사관	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(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	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)

[주의사항]

※ 경력증명서

-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(재직기간, 소속,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)를 발급받아 제출
-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양식(첨부2) 작성 (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며, 날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사실확인서(첨부3) 제출)
-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은 각각 발급 또는 작성
- 경력사항 진위에 관하여 발급처에 별도 확인할 수 있음
- ※ 사실확인서: 제공양식(첨부3) 사용

○ 해외학력 및 경력 관련 제출서류

대상	아포스티유 협약국 [*] (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, 중국 등)	아포스티유 미협약국
외국학력취득자 (졸업, 재학, 이수증명서 등)	①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등 증빙서류 ② 아포스티유 ※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·발급 ※ (중국) 공자아카데미 발급 <u>학력 인증보고서</u> 번역본 또는 한글본 제출 가능 ※ (영국) 주한영국문화원 발급 <u>국가자격시험</u> 응시용 학력확인서 제출 가능 ※ 한글로 발급된 학력확인서는 별도의 번역 필요하지 않음 ③ ①, ②의 번역본 ※ 국내 공증사무소에 번역·공증을 받거나 외국어 번역행정사 번역·인증을 받아 제출	① 학력 인증보고서 ※ 재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 확인 필수 ② ①의 번역본 ※ 국내 공증사무소에 번역·공증을 받거나 외국어 번역행정사 번역·인증을 받아 제출 ※ 한글로 발급된 학력확인서는 별도의 번역 필요하지 않음
외국업체경력자 (경력증명서 등)	· 경력증명서 및 번역본 ※ 절차 - 해당 국가 공증 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받음 -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여 제출	· 경력증명서 및 번역본 ※ 절차 -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의 확인을 받음 -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여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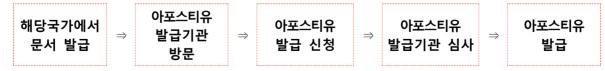
* **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확인**: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(https://www.oka.go.kr/web/content.do?menu_cd=000098)

[주의사항]

-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(학위명, 전공명, 이수기간 등) 명시 필요
- 학년 확인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불인정
- 서류 유효기간에 제한없음
- ※ **연기신청**: 제출서류 준비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한 경우 '외국학력(경력)서류 제출 연기 신청서'(첨부1)를 제출하여 서류 자격심사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당 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

< 문서별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>

- **공문서(국,공립대,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)** 아포스티유(Apostille) 발급 발급절차



- 사문서(사립대, 사기업 경력증명서 등) 발급 발급절차



○ 자격관련 제출서류

자격취득자 ① 자	나격증 원본 (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주의사항]

- 자격명, 등급, 자격번호, 취득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, 합격확인서는 불인정
- 수첩형 자격증 및 카드형 자격증은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
- 상장형 자격증 및 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어야 함

□ 제출방법

○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⇒마이페이지⇒결과확인⇒증빙자료)에 응시자격별로 별도 항목에 각각 나누어서 업로드

학점관련 항목	경력관련 항목	자격관련 항목	기타 항목
- 졸업증명서 - 학위증 - 학위취득증명서 - 할위취득증명서 - 졸업예정증명서 - 재(휴)학증명서 - 재(제)적증명서 - 학점인증증명서 - 기타	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사실확인서 계약서 사본 자력표 기타 	- 관련 자격증 -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	- 외국학력(경력) 서류 제출 연기신청서

[주의사항]

- 업로드 관련 세부사항(각 항목당)

파일수	용량	형식
1개	1MB	pdf, gif, jpg, jpeg, png, bmp, zip, rar

- 하나의 항목에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파일을 모아 압축(zip, rar)하여 1개의 파일만 업로드해야 하며, 압축파일의 업로드 가능 용량도 1MB이므로 파일 크기 조절에 유의
- 제출서류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직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
- 오제출, 압축 등의 문제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완전제출에 해당하여 필기합격 예정자격이 취소되므로 업로드 후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관련문의: 1877-9817

[첨부 1 : 외국학력(경력)서류 제출연기 신청서]

외국학력(경력)서류 제출연기 신청서

◎ 수험자 서약사항

본인은 2025년도 제10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의 합격예정자로 2025년 5월 8일까지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국학력(경력)서류 준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당회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인 2025년 7월 4일까지 제출을 연기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또한, 아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- 1. 2025년 7월 4일까지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 취소
- 2. 연기된 기간 중 서류를 제출하여 필기합격자로 결정되어도 당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

◎ 수험자 인적사항

응시정보	2025년 빅데이터분석기사 제10회 필기시험						
수험번호			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	
주소							
연락처							

2025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

[첨부 2 : 경력증명서]

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
경력증명서

	성명									주민등록변	<u>ত</u>	
제출인	전화번	호										
(본인)	주소											
				재직기	기간				소속 및 직위	담당 (구체적.) 업무 내용 으로 작성혈	용 할 것)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증명사항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	년	월	일 ~	년	월	일	년	개월				
「국가기술7 응시자격 증명								행규칙	시 제14조제2형	}에 따라 ₹	국가기술자	격 검정
										년	월	일
							제출인(본	본인)			(서명 5	또는 인)
한국데야]터산 	업진]흥원정	} 귀히	}							
위 사항이	사실과	다름	없음을 즉	증명합1	니다.							
										년	월	일
기관명:							전화번호	:				
주소: 사업자등록번호:												
1 11 10 1							대표자					(인)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												

[첨부 3 : 사실확인서]

사실확인서

본 사실확인서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,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(공·사문서위조, 변조 등)도 감수하겠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.

■ 입증인 인적사항

입증인 성명	(인)	주민등록	÷번호	
연락처			수험자와의	리 관계	
주 소					
근무처	직	뷔		근무지 연락처	

첨부 :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(별도 발급 후 첨부 필수)

- ※ 입증인 :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(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)
- ※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(입증인의 인감증명서, 공증확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경력확인불가·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

■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,	사실확인서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
수집목적	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
수집근거	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수집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근무처, 직위
이용기간	수집일로부터 1년간

※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?	□ 동의함	□ 동의하지 않음

■ 입증내용

수험자 성명		주민등록	·번호		
주 소		연락:	처		
근무직장명	재직기간	직위	위 담당업무 비고		비고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
년 월 일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

뒤쪽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학력 변동사항 확인서

	성명		생년월일
제출인 (본인)	전화번호		
	학과(전공)	과(전공)	

<학력 변동사항>

①학 적 (필수기재) 학 년 학적상태(휴학, 수료, 제적 등)

②복수전공 (선택기재) 전공명과정명비고(학위 여부)(복수전공, 제2전공 등)(학위과정, 비학위과정)

③전 과 (선택기재)

전과 전	전과 후	
OO과 O학년 수료(수료일자)	00과 0학년 재학	

④ 학과명칭변경 (선택기재)

변경 전	변경 후

※ 학과명칭 변경 시 변경 전/후 교과과정 첨부

본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함에 있어 응시자격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.

제출인(본인)
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

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LJ-L7-XJ 0J	소속	성명	확인
급공격편			
전화번호			

OO대학교 총장(교학처장)

직인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

(뒤쪽)

	□졸업증명서 □수료증명서 □재학증명서 □휴학증명서	
첨부서류	□재적증명서 □제적증명서 □학적부 □교과과정표	
	□기타(직접 작성)	

작성방법

- ① 성명, 소속, 전공명, 학과명칭 변경 사항 등은 한글로 작성하며, 생년월일, 학제, 학년, 졸업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증명서의 작성은 수기작성, PC작성 모두 가능하나, 서식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③ 학과(전공)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작성 예) A과에서 B과로 전과하였으나 A과 2학년 수료사실에 대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을 A과로 작성
- ④ 변동 사항 ① 학적란은 필수기재란이며 학교측에서 인정하는 수험자의 학년과 학적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(작성 예) 3학년 수료 후 휴학중인 수험자의 현재 학년이 4학년으로 인정되는 경우 4학년, 휴학 으로 작성
- ⑤ 변동사항은 ②,③,④ 항목은 수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⑥ 학과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/후 학과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,이 경우 학과 명칭 변경 전/후 교과과정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

- ① 본 확인서는 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수료증명서, 재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학적부 등학교측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의 증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②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/변조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허위 응시자격서류 제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시험합격 취소, 응시자격 정지, 형사상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문서의 위/변조 방지를 위해 사본(복사, 스캔 등) 제출은 불가하며 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④ 허위 학력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적부 등 수험자의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⑤ 학교측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.